## <u>기술인력의 구분·자격 및 직무(제90</u>조 관련)

## 1. 수리검사

구 분	자 격	직 무
검사책임자	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원으로 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.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업무 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. 수리검사 업무에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	수리검사 업무 총괄
검사원	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원으로 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.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업무 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.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에 관 한 교육을 받은 사람 다. 제92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수리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	수리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

## 2. 내압용기 검사

구 분	자 격	직 무
검사책임자	자동차검사대행자의 내압용기검 사원으로서 8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	내압용기재검사·내압용기장착검사 업무 총괄
검사원	자동차검사대행자의 내압용기검 사원으로서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에 따른 산업기사(안전관리, 기 계제작, 기계장비설비·설치, 자 동차 및 금속재료 직무분야만 해당한다) 이상의 자격을 가진	

3 수리검사 · 내압용기검사 외의 검사

구 분	자 격	직 무
검사책임자	가. 자동차검사주무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의 기계직공무원으로서 자 동차검사 및 정비업무에 5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자동차검사소의 검사업무 총괄
검사주무	가. 자동차정비기사의 국가기술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 검사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나.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자동차검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1) 자동차검사진로의 검사업무관 리 및 적합여부 판정 2) 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 부 판정 3) 검사시설의 관리
검사원	가.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나.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 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. 삭제 <2021. 2. 5.>	<ol> <li>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 부 판정</li> <li>검사시설의 관리</li> <li>삭제 &lt;2021. 2. 5.&gt;</li> </ol>

주

- 1. 자동차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란 자동차검사소·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 작 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 용 기계·기구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.
- 2. 기술인력이 검사책임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주무 경력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기술인력의 검사원 경력을 포함한다. 다만, 검사주무 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경력은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가. 자동차정비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인 경우 검사원 경력에서 3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 경력으로 본다.
  - 나.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인 기술인력인 경우 검사원 경력에서 5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 경력으로 본다.
- 3.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

자동차정비기사의 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 취득 전의 검사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.

- 가. 자동차정비기사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: 근무경력의 5분의 4를 검사기사 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.
- 나. 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: 검사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의 7분의 5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.
- 4.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정비기사의 국가 기술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 취득 전 근무경력의 5분의 4를 정비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.
- 5. 내압용기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내압용기재검사 또는 내압용기장착검 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.